비밀유지계약서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IPS(이하 "을"이라 한다)은 3D doping 용 ALD PSG 공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3D ALD doping 용 PSG 공정 (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갑"/"을")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갑 : 강종훈 책임 (031-325-5669)

을 : 안창오 부장 (010-8302-7802)

제 3 조 (비밀 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 ②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





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 하여야 한다.

제 4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 서"(이하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약서"를 제출한 "관련 임직원" 인직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 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 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세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표시)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비밀보호의무는 제3조에 규정한 비밀정보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비밀정보에 한하여 적용된다.

- 1. 비밀정보 제공당시"대외비"등의 표시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
 - 2. 비밀정보 제공당시 비밀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비밀로서 취급되어지고 제공 후 15일 이내에 비밀정보임을 표시하는 문서를 "정보수령자"에게



제 7 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 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9 조 (보증)

-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 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Drop 된 경우, iii)"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 13 조 (구속력)

- ①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수원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첨부: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 년 9월 5일

"감"

"읔"

원익아이피에스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번지

대표이사 이 의 사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

(NDA Participant Agreement)

아래 참여자는 "본 계약"(상기 비밀유지계약서)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Participant Read above Non Disclosure Agreement and swear to keep it sincerely)

< 삼성전자주식회사 : Samsung Electronics Co., Ltd. >

No	부서명	부서장	참여자	서명/印	사원번호	비고
110	(Department)	(Manager)	(Participant)	(Signature)	(Employee NO)	(Remark)
1	Common Tech. PJT	최한메 부장	최한메 부장	J.m.	99046692	
2	Common Tech. PJT	최한메 부장	김태곤 책임	1612	06305302	
3	Common Tech. PJT	최한메 부장	강종훈 책임	(X)	05107584	
4	Common Tech. PJT	최한메 부장	조은영 사원	Ful	10223435	
			301			

< 국문 상호명 :주식회사 원익 IPS , 영문 Company Name :WONIK IPS CO.,LTD >

No	부서명	부서장	참여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Department)	(Manager)	(Participant)	(Signature)	(Passport NO)	(Remark)
1	SMC 사업부문	허노현 전무	하형찬 상무/	Gjarle	640508	_
2	SMC 사업부문	허노현 전무	류동호 부장	lel	68-22-1	
3	SMC 사업부문	허노현 전무	조병철 부장	1/h	130128 - 1030323	
4	SMC 사업부문	허노현 전무	백상천 상무	M	631031 -1074415	
5	SMC 사업부문	허노현 전무	안창오 부장	A Company of the comp	721125	
6	SMC 사업부문	허노현 전무	박주환 과장	1	250713-1037118	



